

직원 구매 혜택 규정

■ 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주요개정내역	개정장	비고
1	2026.05.18	직원 구매 혜택 규정 개정	제정	

■ 결재

구분	작성자	검토자1	검토자2	승인자
성명	인재경영팀	-	-	대표이사
확인				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에르모어(이하 "회사"라 한다) 임직원의 자사 제품 구매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복리후생 증진 및 혜택의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

- ① 본 규정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휴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 (온라인 구매 쿠폰 (더에르고 theergo.co.kr))

- ① 회사는 재직 임직원에게 매주 월요일 더에르고(theergo.co.kr) 전용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.
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주일(일요일 23:59까지)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미사용 시 소멸된다.
- ② 발행 쿠폰의 종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자체배송 쿠폰	업체배송 쿠폰
할인율	25%	10%
발급 매수	1매	1매
구매 한도	실 결제금액 기준 월 100,000원 이내	한도 없음
사용 기한	발행일로부터 1주일 (일요일 23:59까지)	발행일로부터 1주일 (일요일 23:59까지)
미사용 처리	소멸	소멸

※ 자체배송 쿠폰의 월 구매 한도(100,000원)는 실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며, 한도 초과 구매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 (오프라인 구매 할인 (링크맘 용인본점))

- ① 링크맘 용인본점에서 오프라인 상품 구매 시 정상 판매가 기준 10%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단, 특판 상품은 추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결제 시 명함 제시 또는 소속 부서 확인 등 임직원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오프라인 매장 내 진열 상품에 한하여 적용하며, 별도의 구매 한도는 없다.

※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.

제5조 (자체배송 쿠폰 한도 초과 사전 승인)

- ① 더에르고 자체배송 쿠폰의 월 구매 한도(100,000원)를 초과하여 구매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구매 전 품의를 통해 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사전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체배송 쿠폰 혜택을 즉시 정지한다.

제6조 (금지사항)

- ① 대리 주문: 모든 혜택은 본인 및 가족의 실사용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, 제3자(지인 등)를 위한 대리 주문은 엄격히 금지한다.
 - ② 재판매 목적 구매: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- ③ 무단 한도 초과: 사전 승인 없이 자체배송 쿠폰 구매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- ※ 위 금지사항 적발 시 취업규칙 제 55조 (징계의 종류)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, 해당 연도 또는 차년도까지 직원 구매 혜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 (관리 및 점검)

- ① 인재경영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임직원의 구매 현황 및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.
- ②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이전 규정 폐지) 본 규정 시행일과 동시에 이전의 직원 구매 혜택 관련 규정 및 운영 기준은 폐지한다.

제3조 (해석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.